

있으며, 종전의 농지세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,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 법인세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.

<표 6> 농지세와 농업소득세의 비교

구 분	농지세	농업소득세
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에서 농작물(벼와 특수작물)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소득이 있는 자</li> <li>※ 시행령상의 과세대상작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으로 하고, 작물재배업중 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는 벼에 한정</li> <li>- 소득세 과세대상인 시설작물재배소득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</li> </ul> </li> <li>※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
비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자치단체 조합의 농지소득</li> <li>• 개간, 매립·간척지 10년이내(황무지는 5년이내)</li> <li>• 학교, 고아원, 양로원, 수녀원, 사찰, 교회의 실험실습 및 자가소비용</li> <li>• 산림용 묘포지에서 생긴소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세와 같음</li> </ul>
과세표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세표준 = 수입금액 - 필요경비 - (비과세소득+감면소득)-기초공제액(560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세와 같음</li> </ul>